

의안번호	제호	의결사항
의결 연월일	2024. . . (제회)	

산업전환에 따른 고용안정 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안

제출자	국무위원 이정식 (고용노동부장관)
제출 연월일	2024. . .

법제처 심사 전

1. 의결주문

산업전환에 따른 고용안정 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

2. 제안이유

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 및 디지털전환 등 산업구조의 변화에 따라 나타나는 일자리 위험에 대응하여 선제적으로 근로자의 고용안정, 일자리 이동 및 노동전환을 지원하기 위하여 「산업전환에 따른 고용안정 지원 등에 관한 법률」이 제정(법률 제19760호, 2023. 10. 24. 공포, 2024. 4. 25. 시행)됨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3. 주요내용

가. 고용안정 지원 기본계획 수립 절차(안 제2조)

고용노동부장관은 관계기관에 기본계획 수립에 필요한 자료 제출을 요청할 수 있고, 기본계획 수립 시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도록 규정함

나. 고용영향 사전평가 위탁기관의 자격기준(안 제3조)

고용영향 사전평가 위탁 시 위탁기관의 자격기준에 관하여 구체적으로 규정함

다. 고용안정 지원을 위한 의견 청취 및 교육지원(안 제4조)

고용노동부장관이 고용안정 지원 관련 사업을 신설하거나 변경할 경

우 관계 기관의 의견을 들을 수 있고, 관계 기관의 소속 직원에 대해 교육·지원을 제공할 수 있도록 규정함

라. 고용안정 지원 업무 전담기관의 자격기준(안 제5조)

고용안정 지원 업무를 전담하는 기관의 자격기준에 관하여 구체적으로 규정함

마. 관계 기관간의 협조(안 제6조)

고용노동부장관이 관계 기관의 고용안정 지원 관련 사업의 신설·변경 등에 관하여 관련 의견을 제시하고, 협조를 요청할 경우 서면으로 하도록 규정함

바. 권한의 위임(안 제7조)

고용노동부장관이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에게 위임하는 사항에 대해 구체적으로 규정함

4. 주요토의과제

없 음

5.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 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관계부처(기관) 합의 진행 중

라. 기 타 : 1) 입법예고(2024. 1. 11. ~ 2024. 2. 20.) 예정

2) 행정규제 : 진행 예정

산업전환에 따른 고용안정 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안

제1조(목적) 이 영은 「산업전환에 따른 고용안정 지원 등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산업전환에 따른 고용안정 지원 기본계획의 수립 등) ① 고용노동부장관은 「산업전환에 따른 고용안정 지원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7조제1항에 따른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 수립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의 장에게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② 고용노동부장관이 기본계획을 수립한 때에는 지체 없이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3조(고용영향 사전평가 등) 고용노동부장관은 법 제8조제1항에 따른 고용영향 사전평가를 다음 각 호의 자에게 위탁할 수 있다.

1.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출연한 연구기관(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출연기관이 재출연한 연구기관을 포함한다)
2. 민간연구기관
3. 그 밖에 고용노동과 관련된 전문성을 갖춘 기관 또는 단체

제4조(산업전환에 따른 고용안정 지원 등) ① 고용노동부장관은 법 제11

조제1항에 따라 산업전환에 따른 고용안정 지원 관련 사업을 신설하거나 변경할 경우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② 고용노동부장관은 법 제11조제1항에 따라 산업전환에 따른 고용안정 지원 업무를 수행하는 관계 기관의 소속 직원에 대하여 필요한 교육·지원을 할 수 있다.

제5조(산업전환에 따른 고용안정 등 지원체계 구축 등) 고용노동부장관은 법 제13조제3항에 따른 업무를 전담하는 기관을 다음 각 호의 자로 지정할 수 있다.

1.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
2.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기업
3. 그 밖에 고용안정 지원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거나 해당 전문인력과 시설을 갖춘 기관 또는 단체

제6조(관계 기관간의 협조 등) 고용노동부장관은 법 제16조제2항에 따라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협조를 요청하는 경우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

제7조(권한의 위임 등) 고용노동부장관은 법 제17조에 따라 법 제11조제2항의 취업지원 서비스 제공에 관한 권한을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에게 위임한다.

부 칙

이 영은 2024년 4월 25일부터 시행한다.

〈 의안 소관 부서명 〉

고용노동부 지역산업고용정책과	
연 락 처	(044) 202 - 7398